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도시안전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6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을 시작함에 있어, 관내 유관 기관별 협조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개정 및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관제요원 근무 내용의 명문화(안 제13조)
- 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 조문 신설(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생략)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 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기간

- 예고기간 : 2023. 8. 17. ~ 2023. 9. 6.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란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 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한다.

② 관제요원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 예방 등 설치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제업무를 하여야 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긴급 상황 전파 등을 위한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제요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내부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 사고, 재난, 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 해당 기관, 관련 부서 및 재난상황실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

① 구청장은 제10조와 관련하여, 수집된 CCTV 영상정보를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에서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22조에 따라 CCTV 영상정보를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하여 관내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익목적의 CCTV 효율적 운용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란 <u>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 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u>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u>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u>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u>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u>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u>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u>		
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을 말한다.

4. “처리”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을 말한다.

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 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관제요원의 근무)

-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관제 전담요원은 방법, 교통, 재난·재해 등 통합된 CCTV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 ③ 구청장은 관제 전담 요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CCTV로 범죄·사고, 재난·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 해당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한다.
- ② 관제요원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 예방 등 설치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제업무를 하여야 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긴급 상황 전파 등을 위한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관제요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 사고, 재난, 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 해당기관, 관련부서 및 재난상황실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

- ① 구청장은 제10조와 관련하여, 수집된 CCTV 영상정보를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에서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22조에 따라 CCTV 영상정보를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하여 관내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내용에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이인복